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

調 査 部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할 것(영 제 9 조 제 1 항 제 1 호의 2 및 제 3 호의 영업에 한한다).

[별표 10] 행정처분기준의 Ⅱ. 개별기준의 14. 신고 및 준수사항 위반의 가. 시행규칙 제19조(음식점등 영업자의 준수사항) 중의 (1) 제 1 호 또는 제 2 호를 위반한 때만중 “영업정지 15일”을 “영업정지 15일 내지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운용지침

- 가. 제19조(음식점 영업자등의 준수사항) 제 1 호를 개정하여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토록 의무규정을 두었음.
- 나. 별표 10, 행정처분 기준중 Ⅱ의 14. 신고 및 준수사항 위반의 가의 (1)호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을 중전 영업정지 15일을 영업정지 15일 내지 30일로 개정하였음. 따라서, 18세 미만의 자 및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을 출입시켰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처분기준을 영업정지 30일을 적용토록 할 것.
- 다. 대상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포탈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고 특히 18세미만의 자의 출입을 집중 단속할 것.